

이슈 분석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전쟁면책 적용 논쟁

송윤아 연구위원, 조용운 연구위원

약 요

사이버공간 내 전쟁행위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세계 보험업계에서는 2017년 러시아의 낫페 트야(NotPetya) 공격을 계기로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쟁면책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임. 전쟁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사이버공격의 주체와 성격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이버공격의 속 성상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사이버사고에 부합한 면책조항과 부보범위를 논의 중임.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연루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세계 보험업계의 전쟁면책에 대한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손해보험 약관은 전쟁면책조항을 두어. 전시 또는 평화 시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제함
 -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660조에서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 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함1)
 -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개연성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통상의 보험료에 의한 보험 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임2)
 - 전쟁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증권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동 보험증권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다음의 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면책한다: 전시 또는 평화 시 적대적 또는 전쟁행위로서, ① 정부 또는 (법상 또는 사실상) 주권을 가진 조직, ② 육군, 해군, 공군, ③ ① 또는 ②의 대리인 등에 의해 실제 발생한, 임박한, 또는 향후 예상되는 공격을 저지·전투·방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사이버공간 내 전쟁행위'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세계 보험업계에서는 2017년 러시아의 낫페트야(Not Petya) 공격을 계기로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쟁면책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임
 - 2017년 낫펫트야는 시스템 파괴 공격의 일종으로, 64개국 이상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해 금융·전력·통신·교통 등 수 많은 기반시설이 운용에 차질을 빚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손실액이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2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의 국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낫페트야 사이버공격을 러시아 정부 차

¹⁾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 표준약관에 전쟁면책 약관조항이 2010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어 우리나라 생명보험계약은 '지진 등 천재지변, 핵이 나 방사선사고, 전쟁 등의 경우'에도 사망과 상해 등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²⁾ 전주지법 1990. 5. 31., 선고, 90나632, 제1민사부판결: 상고

원의 공격 행위로 발표하지3).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전쟁면책 적용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이에 2018년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Merck & Co)와 미국 식품 대기업 몬델레즈(Mondelez)는 보험회사들을 상대 로 미국 법원에 계약불이행 확인판결을 구함4)
 - 머크, 몬델리즈 등 피해기업들이 가입한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종합보험(all-risk property insurance package) 은 정부나 주권 국가에 의해 시작된 적대적이거나 군사적인 행위를 보장하지 않음
- 전쟁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사이버공격의 주체와 성격을 입증해야 하는 바, 동 소송의 판결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회사는 사이버사고의 공격자를 특정하여 공격자의 배후에 국가가 있다는 점과, 문제의 사이버공격이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hostile and warlike action)임을 입증해야 함
 - 다수 국가가 낫펫트야를 러시아 소행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법정에서 문제의 사이버공격이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임을 입증해야 함
- 다만, 진행 중인 소송 건에서 보험회사가 전쟁면책 적용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험업계가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에 기존 전쟁면책 문구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한계를 가짐
 - 먼저, 보험회사는 공격자가 국가임을 입증해야 하나, 사이버공격의 속성상 공격자를 추적하여 특정하기 어렵고, 공 격자와 특정 국가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 타국 정부가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있음을 확인하더라도 정부가 안보 또는 외교상의 이유로 이를 모두 공표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시 정부조차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 국가 배후설을 공표할 수 있음
 - 또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전쟁면책 적용 여부를 두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 법적 다툼이 빈번해지면, 북한의 소 니 픽처스 공격 사례에서 보듯이, 귀책과 공격속성에 대한 정부의 공표 여부와 용어선택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음
 - 다음으로, 국가가 연루된 모든 사이버공격에 대해 재래식 전쟁면책을 적용한다면, 국가 연루 사이버공격이 빈번한 상황에서 기업에 있어 사이버보험의 효용이 크게 감소함
 - 단독 사이버보험이 본래 포괄위험 담보방식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사이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일부 면책하자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확산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사이버보험이 국가 연루 사이버공 격으로 인한 손실을 면책한다면 단독 사이버보험의 존재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됨5)
 - 이는 단독 사이버보험 전문 보험회사들이 2013년 이후 전쟁면책조항을 약관에 삽입하면서도, 전쟁면책조항에 일 부 사이버 피해에 대한 단서 문구 등을 두어. 기존 포괄위험 담보방식의 기업보험상품과 보장범위에 있어 차별화 를 시도한 이유이기도 함

³⁾ The White House(February 15, 2018),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press-secretary-25/)

⁴⁾ Merck & Co., Inc. v. Ace American Insurance Co.(UNN-L-002682-18), Mondelez International, Inc. v. Zurich American Insurance Company(2018-L-011008)

⁵⁾ Shniderman, A. B.(2019), "Prove It! Judging the Hostile-ro-Warlike-Action Exclusion in Cyber-Insurance Policies," The Yale Law Journal Forum

- 따라서 낫펫트야 사건의 판결에 상관없이. 보험업계는 사이버사고에 부합한 면책조항과 부보범위를 논의 중임
 - GA·IFTRIP은 사이버담보에 내재된 모호성 제거를 위해서는 부보위험을 약관에 명시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이버공격의 개념을 공격자와 공격속성에 따라 사이버 테러리즘, 적대적 사이버행위, 사이버전쟁으로 구분함
 -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중 전쟁으로 선포되었거나 누가 보더라도 전쟁행위로 볼만한 공격을 사이버전쟁으로, 국가 배 후 사이버공격 중 전쟁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행위를 적대적 사이버행위(Hostile Cyber Activity; HCA)로 규정함이
 - 이로써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재래식 전쟁면책조항을 삽입하는 대신, 자사의 역량에 따라 부보기능한 사이버공 격의 유형을 선택하여 약관에 명시할 수 있음
 - Bateman(2020)은 국가연루 사이버공격에 재래식 전쟁면책 적용 시 사이버귀책 규명이 가장 문제이며 대규모 사이 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배후 여부나 사이버사고의 악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이버 대재해 면책을 제안함7)
 - 사이버 대재해 면책은 규명이 어려운 국가 연루 여부를 따지지 않기 위해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귀책 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낫펫트야 관련 소송은, 판결에 상관없이 보험산업에 국가 연루 사이버공격에 부합한 별도의 면책조항 마련의 필 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 및 전쟁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함
 -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 연루 사이버공격을 둘러싼 세계 보험 업계의 전쟁면책에 대한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⁶⁾ The Geneva Association·IFTRIP(2021), "Mapping a Path to Cyber Attribution Consensus", The Geneva Association과 IFTRIP(International Forum of Terrorism Risk Reinsurance and Insurance Pools, 국제 테러리즘 리스크 (재)보험풀 포럼)는 전쟁 면책을 둘러싼 논쟁을 계기로 2019년 작업반을 구성하여 사이버전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⁷⁾ Bateman, J.(2020), "War, Terrorism, and Catastrophe in Cyber Insurance: Understanding and Reforming Exclusion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